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장

제3호

시보

www.namwon.go.kr

제3호 2024. 1. 19(금)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4-112호 토지출입,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	---

보

○ 남원시 공고 제2024-118호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입법예고-----

회					
람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4

남원시 공고 제2024 - 112호

시

토지출입,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남원시에서 시행하는 『덕촌~황벌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또한, 「도로법」 제19조(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에 따른 노선 지정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견청취 등) 규정에 의거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주민, 이해관계인(권리자)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2일

남 원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덕촌~황벌 도로 확포장공사

나. 사업종류 : 읍면시도 확포장공사

다. 위 치 :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202-1번지 등 92필지 일원

- 덕과면 덕촌리 202-1(시점) ~ 보절면 황벌리 1338(종점)

라. 사 업 량 : 도로 확포장 L=2.25km, B=8m

마. 시 행 자 : 남원시장 (남원시청 건설과 도로팀)

바. 사업기간 : 2024년 ~ 2026년

※ 사업추진 중 현장여건 및 기타 사항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될 수 있음

2.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 개별 통지문 발송 및 열람장소에 비치

가. 토 지 :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202-1번지 등 92필지 (면적 : 57,567.1㎡)

나. 지장물건 :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있는 물건 일체

※ 토지 등 세부내역은 붙임 조서 참조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24. 01. 22.(월) ~ 2024. 02. 06.(화) (16일간)

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조서 참조 및 열람장소 비치

다. 열람장소 : 남원시청 건설과 도로팀 [☎063-620-6532(공사감독), 6536(보상담당)] 남원

시청 홈페이지 (www.namwon.go.kr)

라. 이의신청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 열람 및 이의 신청시간은 09:00 ~ 18:00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

4. 보상시기·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후 (2024. 2월 이후 개별 통지)

나. 보상방법 :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후 개인별 현금 보상 (계좌 입금)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통지)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및 수용

라. 보상금 산정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산술평균한 금액

※ 사업추진 중 기타사항에 따라 보상시기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5. 감정평가업자 선정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보상액의 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에 따라 전라북도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 나. 추천기한 :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다.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 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 가능

6. 기 타 사 항

- 가.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장소, 보상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시기에 맞춰 상세 안내문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나. 토지조서, 물건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보상이 불필요할 경우 보상에 서 제외하고, 누락되었을 경우 실사를 거쳐 보상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 다. 사업인정 의견청취, 편입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주소나 거주지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라.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편입면적(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마.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 바. 열람 및 이의신청,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청 건설과 도로팀 [☎063-620-6532(공사감독), 6536(보상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세목조서(별첨) 1부.
 - 2. 의견서 1부. 끝.

시

							편입	토지조서		
연번		토기	디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대장상소유자		비고
▼	시/군 🔻	동/읍/ 🔻	리 🔻	지번▼	٦v	(m;) 🗻	V V	<u>7</u>	성명 🔻	71-
1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202-1	도	15.0	15.0		남원시	2/2/2/2/2/2/2/2/2/2/2/2/2/2/2/2/2/2/2/2/
2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산56-9	도	60.0	60.0		남원시	
3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산56-10	£	268.0	268.0	255	신*섭	
4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1215	도	15,587.0	761.0		국(농림수산부)	
5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1139-2	답	707.0	707.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평촌로 70, 1003동 2102호(동백동·호수마을상록롯데캐슬)	김⁺곤	
6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1139-1	모	269.0	184.0		남원시	
7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1224	도	1,227.0	5,0		국(농림수산부)	
8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202-3	도	2.0	2.0	ΛΙΤΙ	남원시	••••••••
9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202-7	전	5.0	5.0_	스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신*윤	
10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213-12	답	296.0	296.0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덕과덕동윗길 45-3	신*승	
11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1228	7	1,735.0	449.0		국(농림수산부)	
12	남원시	목과면	덕촌리	1140-1	답	172.0	172.0	65	신 * 용	
13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1141-1	답	157.0	157.0	932	감*금	
14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1142-1	답	186.0	186.0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덕과덕동윗길 21-4	신 t 섭	
15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1143-1	답	326.0	326,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1612-20 2048호	김#배	
16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1229	£	3,967.0	1,480.0		국(농림수산부)	
17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1144-1	답	605.0	605.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55-6 일성인포아파트 씨-2201	김*배	
18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1145-1	답	359.0	359.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41길 162, 101호(홍은동)	최+종	
19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336-4	답	44.0	44.0	121	김+삼	
20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1146-1	답	131.0	13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816, 507동 1102호(시흥동.벽산아파트)	감난문	

21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334-5	답	74.0	74.0	271	박*선
22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1147-1	답	661.0	66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816, 507동 1102호(시흥동 벽산아파트)	감문
23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1230	7	1,458.0	57.0		국(농림수산부)
24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1148-1	답	140.0	140.0	516	감류
25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산225	7	99.0	99.0		국(건설부)
26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331-8	답	43,0	43.0	617	김 · 식
27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331-9	전	2,254.0	2,254.0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덕과덕동윗길 56-1	신*운 외 18인
28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산54-1	임	1,107.0	1,107.0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144	밀양박씨춘환공종중
29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301-3	전	789.0	789.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81, 11동 302호 (평화동1가 코오롱아파트)	이*화
30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산48-1	임	2,749.0	2,749.0=	주생면 지당리 263	김*순
31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산49-1	임	265.0	265.0	경기도 광주사 실촌읍 삼리 125-1 킴스빌리지 101동1507호	최*희
32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산36-3	임	626.0	626.0	사매면 대신리 86	전주이씨영해군파 덕촌종중
33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산37-1	햠	2,463.0	2,463.0	84	모+근 외 1인
34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산40-1	임	3,316.0	3,316.0	울산시 동구 서부동 257-4 현대패밀리서부아파트 111-1201	곤 ∗봉
35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산42-1	임	148.0	148.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두간6길 10, 103동 506호(송천동1가 지에스송천자이아파트)	윤·근
36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산41-1	임	6,197.0	6,197.0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90-1 인후꿈마을부영아파트 205-504	김#철
37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산227	도	3,074.0	588.0		국(건설부)
38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산195-1	임	155,0	155.0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고정리 891	이*국 외 2인
39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산195-2	임	774.0	774.0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고정리 891	이*국 외 2인
40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산196-1	임	143.0	143.0	용산리 566	김*송

41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산53-1	임	851.0	851.0	전주시 동서학동 61	한수 -
42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산122	£	2,182.0	363.0		국(건설부)
43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산52-1	임	424.0	424.0	전주시 동서학동 61	Đ * 수
44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산50-1	임	2,355,0	2,355.0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663-6	박태
45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산51-1	임	805.0	805.0	전주시 동서 <mark>학동 61</mark>	한 ' 수
46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산48-1	임	2,724.0	2,724.0	남원군 보절면 황벌리 416	이*석 외 1인
47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산46-4	임	2,115.0	2,115.0	전주시 태평동1가 8	김*수
48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산46-3	임	1,235.0	1,235.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39길 100, 107동 604호(등촌동 대림아파트)	노+규
49	남원시	보철면	황벌리	산41-4	임	2,916.0	2,916.0	서울 영등포규 문래동3가 4	유*환 외 4인
50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산123	7	128.0	128.0=		국(건설부)
51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1321	7	2,192.9	1,147.0		국(농림축산식품부)
52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산37-7	임	2,916.0	2,916.0	신파 881	안*영외1인
53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1281-9	답	118.1	118.1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주촌1길 23	소*만
54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1281-10	답	56.2	56.2	전라북도 남원시 성황단길 12, 3동 208호(왕정동,명지아파트)	조 + 훈
55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1281-11	답	76.7	76.7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3-1 신일아파트 102-211	L*7
56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1281-12	답	239.4	239.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3-1 신일아파트 102-211	<u></u> ±*7
57	남원시	보철면	황벌리	1281-13	답	148.4	148.4	734	∆*ē
58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1281-14	답	60.6	60.6	전라북도 남원시 보절면 내황길 1480-1	노*화
59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1281-15	답	58.4	58.4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395 현대맨션 6-302	<u></u>
60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1329	7	568,3	32.0		국(농림축산식품부)

61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1322	7	909.6	40.0		국(농림축산식품부)
62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1282-5	답	120.4	120.4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01, 104동 1304호(태평동 신세계쉐덴)	노 * 규
63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1283-4	답	527.5	527.5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255 은빛아파트 106-1205	Ů *
64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1319	ደ	4,033.1	142.0		국(농림축산식품부)
65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908-7	Ω.	60.0	60.0	856	노+옥
66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908-8	전	540.0	540.0	856	노사목
67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1330	7	1,147.0	145.0		국(농림축산식품부)
68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1287-4	답	27.7	27.7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21길 73-1(암사동)	소+권
69	남원시	보철면	황벌리	1288-6	맙	651.0	651,0	인천광역시 연수구 랜드마크로 68, 102동 2906호(송모동,랜드마크시티센트럴더샵)	소난수
70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1288-7	답	827.5	827.5=	731	이+재
71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1331	£	989. <mark>8</mark>	709.0	a quantu kumu (luusu) muusu (luusu) kuu (luusu) maatuu maatuu maatuu kumu (luusu) maatuu kumu (luusu) maatuu k	국(농림축산식품부)
72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979-3	7	143.0	18.0		국(농림축산식품부)
73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1332	7	977.4	426.0		국(농림축산식품부)
74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1288-8	답	535. <mark>4</mark>	535.4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13-11 동부아파트 103-506	노t곤
75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1288-9	답	243.8	243.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372-16	이*순
76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1288-10	답	139.5	139.5	834-1	강화노씨황죽종중
77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산28-5	임	142.0	142.0	서울 중랑구 면목동 581 대원칸타빌아파트 102-1803	이+완
78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1333	7	4,964.8	1,110.0	4111	국(농림축산식품부)
79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1334	7	1,637.6	141.0		국(농림축산식품부)
80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1289-1	답	224.7	224.7	855	노*화 외 2인

	총계					100,956.1	57,567.1		
92	남원시	보절면	황벨리	1290-6	먑	6.0	6.0	장수군 산서면 오산리 168	권*근 외 2 인
91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787-3	답	6.0	6.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 253, 103동 506호 (관교동, 동부아파트)	F-F
90	남원시	보절면	활별리	909-1	전	4.0	4.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160-19	박순
89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1338	7	1,068.3	98.0		국(농림축산식품부)
88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1294-6	답	84.6	84.6	834	노천
87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1294-4	먑	408.5	408.5	V 834	Ŀŧ천
86	남원시	보절면	황造	1294-9	답	428,1	428,1	834	ᆦ천
85	남원시	보절면	황	1294-8	답	374.9	374.9	731	O +7A
84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1294-7	맙	65.7	65.7	진기리 481	단양우씨순겸공파종중
83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1339	£	3,093.1	1,298.0	1328	국(농림축산식품부)
82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1290-5	답	123.0	123.0	728	최+성 외 6인
81	남원시	보철면	황벌리	1335	Ξ	1,629.1	271.0		국(농림축산식품부)

보상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청취 공고 의견서

사업명	덕촌-황벌 도로 확포장공	Al-
사업장 위치	남원시 덕과면 월평리 ~ 보절면 황벌리 일원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그건제물자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남원시 공고 제2024 - 118호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5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주민소득사업의 추진 방향이 농업경영자금 융자에서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목적, 정의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지원대상, 융자조건, 지원 한도 규정 (안 제3조~안 제5조)
- 다.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 지급 방법 (안 제6조, 안 제7조)
- 라. 환수 및 지원 중지, 지도·감독 규정 (안 제8조~안 제10조)
- **3** 입법예고기간 : 2024. 1. 15. ~ 2024. 2. 4. (20일간)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4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시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농정과 농정기획팀
- 다.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발송(마감일 소인 유효), Fax(063-620-6713) 이메일(kmj326619@korea.kr)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기업지원과(063-620-63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 지원 조례안 : 붙임

남워시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4. 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농 정 과 장

1. 개정이유

제3호

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주민소득사업의 추진 방향이 농업경영자금 융자에서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원대상. 융자조건. 지원 한도 규정 (안 제3조~안 제5조)

다.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 지급 방법 (안 제6조, 안 제7조)

라. 환수 및 지원 중지. 지도·감독 규정 (안 제8조~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강: 2024. 1. 15. ~ 2024. 2. 4.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붙임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시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의 주민소득사업의 이차보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금융기관"이란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위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 4. "융자금"이란 농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 5. "이차보전금"이란 융자금의 이자를 시에서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농업경영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융자를 받은 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이차보전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 2. 「농어·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일 것 제4조(융자 조건) 이차보전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 1. 수도작, 원예, 특작, 축산, 산림, 수산, 유통 및 식품가공 분야의 생산소득사업
- 2.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관련된 사업

시

- 3. 그 밖에 농업소득 증대 및 소득원 개발에 해당되는 사업
- 제5조(이자보전금 지원) 이차보전 지원은 농어업경영융자금의 이자에 대하여 자부담 1.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 중 최대 3퍼센트 이내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되, 이차보전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제6조(지원신청) ① 이차보전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차보전지 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자가 제3조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해야한다
- 제7조(지급방법) ① 이차보전지원은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려는 금융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이차보전지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과 이차보전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및 지원중지) 시장은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을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 다.
 -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 2.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때
 - 3. 사망, 전출, 사업 포기 등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9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이차보전지원을 받은 자는 농어업경영융자금 상환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상환기간 전에 상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사업 추진실태 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지원의 규모, 조건, 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어 융자를 받은 자는 융자금의 상환 완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 (제6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	5					접	수일			
	성 명				성	별			생년 월일	
신청자	주 소									
	영 경 경						연택	각처		
	사업분여)‡		사업	명				구업 구모	
신 생 내 용	사업대싱	·지								
	사업비		계				융	자		자 부 담
	(천원)									

농업경영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①

남 원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 부

2024. 1. 19(금)

사 업 계 획 서

보

1. 현 황

	구	분	<u>t</u>	<u> </u>	밭	과 수	원		계
영농규모	소	유							
(m^2)	임	차							
	7	1							
재배현황	Ľ	月	사	과	刖	포	도		계
(m²)									
가축사육	한	우	돼	지	닭				계
규모(두,수)									

- 2. 사업계획
 - 사 업 명 :
 - 세부사용내용

세부사업명	ュ	개	rl	ار	al 어 라	入) 업 비	(천원)
기구사합당	11	4	[인	/r	사 업 량	합 계	융 자	자부담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별지 제2호서식]

시

이차보전금 지급 청구서(제7조제2항 관련)

년도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의 대출된 융자금의 이자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인

남 원 시 장 귀하

융자금 이차보전금 청구내역

(단위 : 원)

채 무 자		융 자 금		산출내역		이 차 보 전 금	
주 소	성 명	일 자	금 액	원 금 잔 액	기간 이율(%)	및 청구액	
계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 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업인의 안정적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금 지원 확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함.
- O 관련조문
 -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이차보전 지원)
-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의 전제
 - 농업인 이차보전금 지원
 - 비용추계의 결과
 - 연간 예산 계획: 30,000천원 [※ 2024년도 전체 예산]
 - · 농업인 이차보전금: 30,000천원
 - 연도별 예산 추계

(단위:천원)

연도	합계	2024	2025	2026	2027	비고
총 비 용	300,000	30,000	60,000	90,000	120,000	
성광인 퉤반증이 한 사람	300,000	30,000	60,000	90,000	120,000	

- 3. 재원 조달 방안
- O 재원조달계획 : 전액 시비 편성
- 4. 그 밖의 사항
- O 작 성 자 : 농정과장 조대성

붙임

관련 법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20. 12. 8.>
 -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 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 마. 생태계의 보전
 -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 10. 삭제 <2015. 6. 22.>
- 11. 삭제 <2015. 6. 22.>